

재일코리안

- 일본에는 외국인이 어느 정도 생활하고 있을까요?
- 왜 조선·한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 재일코리안의 루트
- 재일코리안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 재일코리안들의 빛
- 자료 I
 - 한일관계연표
 - 재일코리안관련연표
- 자료II(재일코리안의 생활)
 - 전쟁중
 - 전쟁후
 - 현재(코리안 타운을 걸어보며)
- 자료III(재일코리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
 - 행정상의 문제
 - 교육상의 문제
 - 주택 문제
 - 취직 문제
 - 상업상의 문제
 - 지문날인 문제
 - 참정권 문제

제일코리안

~일본에는 외국인이 어느 정도 생활하고 있을까요?~

이하의 [표1]은 국적별로 본 외국인 등록자수, 일본에 사는 외국인의 현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어떤 것을 알 수 있을지 조사해 봅시다.

[표1] 1997년 국적(출신지)별 외국인 등록자수

	등록자수(명)	구성비(%)
총수	1,482,707	
한국·조선	645,373	43.5
중국	252,164	17.0
브라질	233,254	15.7
필리핀	93,265	6.3
미국	43,690	3.0
페루	40,394	2.7
기타	174,567	11.8

외국인 등록자수는 1482707명(1997년)이니, 외국인이 일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가 됩니다.

그런데 표를 잘 보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일코리아

~ 왜 조선·한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

표를 보면 외국인 등록자 중에서 조선·한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43.5%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율이 큰 원인은 지리적으로 볼 때, 한국·조선이 일본에서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원인이 따로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일본과 조선·한국의 관계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조사하면, 고대부터 많은 조선의 문화와 전통이 일본에 전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

한편, 코리아 타운(주2)이라고 불리는 거리도 현재 일본에 존재합니다. 오오사카(大阪)부내의 시에서는 '와소 축제'가,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에서는 '아리랑 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일본에 많은 영향을 미쳐온 조선·한국의 문화와 현재 일본에서 사는 제일조선·한국인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었는지, 이 페이지에서는 제일조선인들의 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일코리안

~재일코리안의 루츠~

재일코리안이란 한반도에 국적을 두고, 현재 일본에서 살고 있는 재일 한국, 조선인의 총칭입니다. 재일외국인 등록자수는 1999년 5월현재 151만명을 넘습니다. 그중, 재일 코리안의 비율은 약 42%로, 재일외국인의 구성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일본은 대륙과의 교류가 활발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건너와서 정주했습니다. 그들은 벼농사와 토기 제조법 등, 많은 대륙문화를 일본에 전하고, 정치·경제·문화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참고] 한일 문화교류

여기서는 현재의 재일코리안들의 루트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겠습니다.

I : 1910년 전후 ~1945년 패전(연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의한 식민지정책과 재일코리안의 형성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1890년대 이후부터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가운데, 조선사람들이 일본에 오게 되었습니다(한국합방 이전부터 일본의 조선에 대한 지배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1910년 「한일합방」 후, 급속히 재일코리안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1910년대의 식민지정책(토지조사사업)에 의해 농지에서 쫓겨난 조선농민이나 생활이 곤궁해진 민중들은, 생활의 양식을 찾아서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일본의 산업계는 「부지런하고 싼 노동력」으로서 조선사람들은 이용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의 격화로 전시체제의 강화를 노린 일본은 국민징용령을 이용하여 조선민중을 전쟁에 이용했습니다. 집단적 강제연행도 1939년 이후 1945년의 패전까지 계속되어 많은 조선사람들이 일본에 끌려왔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됩니다.

일본

산업계 「싼 노동력」에 대한 기대

일본경제 호황기→대량의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불황기→싼 노동력으로 극복하기 위해

전시→일본인 노동자가 빠진 자리를 보충하기 위해

일본정치 || (정경의 유착)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에 의한 집단 강제연행

↑

조선

일본의 식민지정책으로 인한 조선민중의 생활고

-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한 농민의 몰락.
- 산미증식계획의 실패로 인한 이농.

II : 1946년 ~ 2000년(연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국의 포츠담 선언을 수락해 무조건항복했습니다. 일본의 조선 지배는 끝났습니다.

조선으로 귀국하려는 재일코리안이 살도했습니다만, 조선으로의 연락선이 모자랐고, 일본정부도 이미 그들을 억지하는 힘을 잃은 상태에서 유효적인 조치도 없는 채,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재일조선인은 방치되었습니다.

일본점령직후의 GHQ(연합국군 총사령부)의 재일조선인정책에는 확고한 방침이 없었습니다. 재일코리안의 대우에 대해서도 「해방 국민」으로서 귀국을 보장한 한편, 탄광노동자인 조선인과 중국인의 귀국은 금지해 「적국 사랑 취급」을 했습니다. 홋카이도(北海道)의 유우마리(夕張)탄광이나 조오반(常磐)탄광에서는 이 조치에 대한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패전직후에 한반도에 귀국한 사랑의 수는 [표4] 「일본패전직후에 한반도에 돌아간 사랑의 수」와 같습니다.

1945년 8월~1946년 3월	약 1300000
1946년 4월~1946년 12월	82900
1947년	8743
1948년	2822
1949년	3482
1950년	2294

[표4] 「일본패전직후에 한반도에 돌아간 사람의 수」 (후생성 인양원호국 통계)
『在日コリアン 百年史』金贊汀, 三五館 1997년에서 인용

그러나 재일코리안들은 「해방」과 「독립」의 열기 속에서 귀국하긴 했으나, 조선에는 이미 생활 수단이 없는 것을 알고, 귀국한 사람의 일부가 일본에 재입국해 오는 혼란도 일어났습니다. 재일코리안 사이에는 본국에 돌아가도 생활이 어렵다는 정보가 이미 전해지고 있었으며, 일본에 생활기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귀국하려는 열의가 희박해졌습니다.

GHQ는 냉전이 시작한 상태였던 것도 있어 1946년 3월 이후, 「38도선 이북을 본적지로 하는 조선인이 귀국하는 것을 정지시키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일본정부도 「4월 1일 이후의 조선인 귀환자는,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하는 조치」를 통달했습니다. GHQ는 공산주의국가에 대한 반공정책으로서, 그리고 일본정부는 재산의 감소, 운수비 부담의 증대를 기피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본국에 돌아가도 생활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재일조선인은 재산을 가지고 나가는 것의 제한 조치로 인해 귀국후의 생활을 더욱 우려해서 귀국을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재일코리안의 귀환이 정체되고, 그 후, 조선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많은 재일코리안이 일본에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일본에 잔류한 조선인과 그 후손이 오늘날의 재일코리안입니다.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와 동시에 재일조선·한국인은 일본국적을 일방적으로 상실하여, 다른 외국인과 동등하게 취급하게 되었습니다.(여기를 클릭 → 다음 항목 및 자료로)

전후 여러 재일단체가 만들어져서 민족교육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어교육이 정과에서 없어지거나, 민족학교 교원도 문부성이 발행한 교원면허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민족학교는 폐쇄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 결과, 각지에서 민족학교 폐쇄에 대한 반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정세에서 1948년 8월에는 대한민국(이하 한국)이, 9월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이 성립되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악화함에 따라 일본국내의 재일단체의 대립도 심해졌습니다.

한반도에서의 남북대립은 일본국내의 재일단체인 「총련」과 「민단」과의 대립도 격화시켰습니다.

1961년 5월, 한국에서는 박정희 정권이 수립되어, 반공군사체제의 강화와 국내경제의 재건이 추진되었습니다. 동년 7월에 북한이 소련·중국과 군사동맹을 맺은 것

이 한국·일본·미국을 자극했습니다.

동서냉전이 긴장감을 더하는 가운데, 1965년 6월 「한일기본조약 및 제협정」이 한국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인되었습니다. 이 협정에서는 재일코리안의 사회적 청구권의 포기와 전후보상 청구권의 포기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일코리안의 지위나 현황의 여러가지 문제의 해결이 보류되어,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1980년에는 지방공무원의 채용문제와 지문날인거부문제, 노령자 연금문제, 지방참정권문제가 표면화되었습니다. 또한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된 전후보상 청구문제와 더불어, 재일코리안의 사회적 권리와 생활상의 보호를 둘러싼 문제는 2000년을 맞이한 지금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일코리안

~재일코리안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현재 일본에서 생활하는 재일코리안의 대부분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생활의 양식을 잃어 일본에 건너온 사랑들이나, 「제국신문」으로서 강제로 끌려온 사랑들과 그 자손입니다.

전쟁은 일본국적으로 가지고(한일합방으로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생활했었습니다만, 전후 1952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로 일본국적을 상실하여 다른 재일외국인과 동등하게 취급되어 왔습니다.

일본과 같이 전쟁에서 패한 독일(구 서독)이 전후 식민지로서 지배하던 오스트리아 사랑들에게 국적의 선택(독일로 하던가 오스트리아로 하던가)을 인정한 것과는 달리, 재일코리안의 사랑들에게는 국적을 선택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일코리안이 일본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외국인과 똑같이 「귀화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일코리안은 재일외국인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예를 들면 참정권 등)가 제한되며, 행정상의 문제(복지와 연금 등)와 교육상의 문제(진학 자격 등), 경제상의 문제(취직 차별 등), 민족으로서의 정체성 상실 문제(모국어의 상실)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불안정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재일코리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또한 법률적으로 재일코리안들에 대하여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매일 생활을 일본인과 똑같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일코리안들의 권리가 보장되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것은,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사회, 서로의 특징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풍요로운 이문화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유네스코의 이념 「전쟁은 사랑의 마음 속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 속에 평화의 요새를 만들어야 한다」의 “평화의 요새”속에서 서로의 좋은 점을 인정하는 정신, 타자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한국의 여러분은 재일코리안의 문제를 한일교류의 하나의 과제로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재일코리안

~재일코리안들의 빛~

현재 재일코리안은 다양한 방향으로 빛을 발하는 존재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 빛은 주로 일본으로, 한반도로, 그리고 한일관계로 향해서 보내지고 있습니다.

I: 일본국내에 대한 빛 → 일본의 진정한 국제화 실현을 위해

- 공무원의 채용자격에서 국적 조항을 없애는 지방자치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 무연금 외국적의 고령자에 대한 생활보호에 나서는 지방자치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 코리안 타운에 대표되는 코리안 문화가 일본에서 정착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사회가 될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II: 한반도에 대한 빛 → 남한과 북한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 북과 남을 넘은 재일코리안의 연대가 생길 조짐이 보입니다.
- ※ 남북통일을 위한 단서로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

III: 한일관계에 대한 빛 → 보다 좋은 관계를 위하여

- 일본과 한국의 우호의 가교로서 활약하는 재일코리안들이 존재합니다. (여기를 클릭)
- ※ 한일 쌍방의 문화, 사회에 정통해 있는 재일코리안의 힘.

[참고자료]

이러한 빛은 더욱 커져서 세계로 향하여 보내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한일청년사업의 여행중, 유성에서 두 명의 한국 청년을 만났습니다. 두 명 다 학생이었고, 한 명은 고등학생 시절에 부모님의 일로 일본에서 일년간 일본어 전문학교에 다닌 적이 있는 청년이었으며, 또 한 명은 입영을 앞두고 휴학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일본에 온 적이 있는 청년은, 일본에서의 체험에서 민족적인 차별을 느낀 적이 있었다는 것, 아주 좋은 일본인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 등을 이야기해 주었고, 동년배의 젊은이들도 더 일본에 가야 한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한국도 마찬가지로 「좋은 사랑도 있고 나쁜 사랑도 있다」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재일코리안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재일코리안이 해결할 문제이며, 한국 정부는 간섭할

수 없지 않을까 라고 하며, 그 이유는 선진국으로서 일본이 더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 명은 일본에 관심이 있는 한국 젊은이는 많다고 하면서, 반대로 일본의 젊은이는 한국에 대하여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지 알고 싶다고 물어왔습니다. 재일코리안의 존재에 대해서는, 텔레비전에서 J리그의 이준의 재일코리안 선수가 한국 프로 리그에서도 일본인 취급을 받아서 받아들여 주지 않아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 참정권 등의 권리가 없는 것은 모르고, 그것을 알고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홈 페이지에서 그 존재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여러가지 압력을 받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었습니다.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홈 페이지가 일본이 보다 민주화하고, 국제화하는 것을 촉진하고, 인권의 보편화를 추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을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참고문헌

- 『在日朝鮮人』朴鐘鳴編 明石書店 1999年
『ふたつの戦後と日本』姜尚中著 三一書房 1995年
『人権問題と多文化社会』曾和信一 明石書店 1996年
『永住市民と国民国家』トマス・ハマー著 明石書店 1999年
『在日コリアン百年史』金贊汀著 三五館 1997年
『在日外国人』田中宏著 岩波新書 1995年
『在日韓国・朝鮮人』福岡安則著 中公新書 1993年
『コリアン世界の旅』野村進著 講談社 1996年
『半分のふるさと』李相琴著 福音館書店 1996年
『超越する民』杉原達著 新幹社 1998年
『入門韓国の歴史』石渡延男(監訳) 三橋広夫(共訳) 明石書店 1998年
『問われる 多文化共生』(国際人権ブックレット) ヒューライツ大阪編集・発行 解
放出版社 1998年
『歴史に見る日本と韓国・朝鮮』鈴木秀夫・吉井哲編著 明石書店 1999年
『<在日>という生き方』朴一著 講談社選著メチエ 1999年

참고자료

민단 홈페이지

제일코리안

~자료1 : 한일관계연표~

<명치(明治)시대>

- 1875년 강화도사건(운양호사건)
- 1876년 조일수호조규
(내용) 부산·인천·원산의 개항
일본의 영사재판권을 승인하는 것
관세를 면제하는 것
- 1882년 임오군란
...보수배외파가 친일파를 배제하기 위해 일으킨 반란. 일본공사관 습격. 청이 출병하여 반란을 진압. 사건후 일본은 제물포조약에 의해 손해배상과 군대주류권을 한국정부에게 인정하도록 했다.
- 1884년 갑신정변
...김옥균 등의 독립당이 사대당을 배제하려고 한 사건. 청의 개입으로 실패.
- 1885년 천진조약
...일본과 청이 맺은 조약.
한반도로부터 청일양국의 군을 철수·출병예고·군사교관 파견중지
- 1894년 갑오농민전쟁
농민전쟁후, 한국정부 개혁문제로 청일양국이 충돌해 청일전쟁 발발.
- 1895년 시모노세키조약
(일본 전권-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무츠 무네미츠(陸奥宗光), 청 전권-이홍장(李鴻章))
(내용) 1. 청은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한다.
2. 요동반도·대만·평호열도를 일본에 할양한다.
3. 배상금 2억냥(일본돈으로 3억 1000만)
4. 沙市·重慶·蘇州·杭州의 개시·개항...공업권의 승인
삼국간섭...러시아·프랑스·독일이 요동반도의 반환을 일본에게 요구→일본 용합
그 후, 청은 구미열강, 일본에 의해 식민지화한다.
- 1902년 제1차영일동맹 체결
- 1904년 「일본이 세계의 무대에 등장」 → 러일전쟁의 승리
후의 연합군 총사령관 맥아더 : 일본인의 천황에 대한 충성심에 외경심과 경계심을 가진다.
후의 초대인도수상 네루 : 아시아인의 아시아에 대한 희망
2월, 한일의정서 조인

(내용) 일본정부가 한국 황실의 안전과 영토의 보전을 받는다.

타국의 침략이나 내란으로 인해 한국 황실의 안전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일본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한국정부는 그것을 위해 협력(군용지 제공)한다.

또한 이 「의정서」에 위반하는 협약을 한국은 타국과 체결해서는 안 된다.

8월, 제1차 한일협약 조인...외교·재정 고문의 임용 등.

1905년 포츠머드 회의

(일본 전권 : 고무라 주타로오(小村寿太郎), 러시아 전권 : 윗티)

독일황제 빌헬름2세의 코멘트 : 일본이 아시아인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세계인류의 위기

(강화조약 내용)

1. 한국에서의 지도권
2. 旅順·大連의 조차권, 長春 이남의 철도와 부설의 이권
3. 사할린의 남쪽 반을 할양
4. 연해주·감창카에서의 어업권

배상금 요구는 거부→조약에 불만을 가진 시민들의 폭동

「히비야(日比谷) 방화 사건」이 일어남.

제2차한일협약 조인(을사조약)

(내용) 일본정부는 한국의 외교권을 접수한다.

한국통치기관으로서 한국통감부를 설치한다.

(초대통감 : 이토 히로부미)

1907년 헤이그 밀사사건

한국황제 고종이 제2차한일협약의 무효를 호소하기 위해,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리던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한 사건. 실패로 끝난다.

사건후 고종은 황제의 지위에서 밀려난다. 의병투쟁의 절정.

1908년 제3차한일협약 조인

통감부에 의한 내정권 완전 장악

1909년 안중근, 하얼빈역 구내에서 초대 한국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

1910년 한일합방

「한국」에서 「일본령 조선」으로.

한국은 영토·국가·민족을 일본에게 빼앗겼다.

조선총독부(경성)의 설치, 초대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카(寺内正毅)

동아일보 「조선인의 생존권」 : 남아 있는 것은 노동력과 땅 뿐. 그 땅마저 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으로 조선인의 땅이 수탈된다. 땅을 잃은 조선인의 일본이주가 증가.

<다이쇼(大正)시대>

-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1918년 가을 종결)
영일동맹을 핑계로 참전, 중국 독일령으로 출병, 점거.
- 1917년 러시아혁명 발발→1918년 시베리아 출병.
- 1918년 쌀소동 일어난다→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1920년 한반도에서 산미증식계획¹⁾이 추진되었다.
- 1919년 3월 1일, 3·1 독립운동(독립만세운동)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반대해서 '독립만세'를 외친 조선 전역에 걸친 조선민족 독립운동. 총독부·조선주류군·경찰에 의해 탄압.
같은 시기에 대만에서는…대만의 선주민(高砂族)에게 일본식 농업·일본어 교육이 행해지고 있었다. 철저한 황민화교육·동화정책.
- 19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M7.9). 도쿄, 요코하마(横浜)에서 14만명 이상의 희생자.
집단 혼란 상태에서 많은 조선인과 사회주의자가 학살되었다.

<쇼와(昭和)시대>

- 1931년 유조호(柳條湖)사건
일본군에 의한 남만주철도의 폭파사건→만주사변 개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국제연맹에서 릿튼 조사단이 파견되었다.
일본의 주장 「만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자위 행동이며, 만주는 일본의 생명선이다.」
사조단의 결론 「폭파는 일본군에 의한 것. 정당한 자위라고는 할 수 없다.
세계질서야말로 현대문명에 있어서의 생명선이다.」
- 1932년 3월1일 만주국 건국. 황제 부의(溥儀).
- 1933년 일본, 국제연맹을 탈퇴, 국제적 고립 강해지다.
- 1937년 7월, 盧溝橋사건(중일 양군의 충돌) 발발 →중일전쟁으로
- 1938년 수도 南京을 점령
남경 점령과 전후해서 다수의 중국병 포로 집단학살.
「便衣兵(게릴라) 사냥」에 의해 민간인이 학살되었다.
소위 남경대학살이다. 그 수는 약 15만명이라고 한다.
(중국측 발표는 30만명)

1) 산미(産米増殖)증식계획

15년계획으로 토지개량과 경작방법의 개선, 수리시설의 완비로 증산을 노렸다.
그러나 세계공황이 미가의 폭락을 초래하고, 일본의 지주에 의한 조선미 이입반대도 일어나, 계획은 중지되었다. 결과로서 조선반도에서는 이농이 진행된다.

2)

4월, 국가총동원법 공포

1939년 7월 국민징용령³⁾ 시행

조선인을 노동력으로서 이용

→조선인의 집단적 강제연행 개시([표3] 참조)

[표3] 조선인 강제연행자수(노무동원관계)

연도	석탄산	금속산	토건	공장 기타	계
1939	24279	5042	9379		38700
1940	35431	8069	9898	1546	54944
1941	32099	8988	9540	2865	53492
1942	74576	9483	14848	13100	112007
1943	65208	13660	28280	15089	122237
1944	85953	30507	33382	130462	280304
1945	1000		2000	3000	6000
계	318546	75749	107327	166062	667684

출처 「일본의 전시 생활표준과 인적 자원의 이용」

(『미국전략폭격조사단 보고서』 제42권)

『재일조선인』 朴鐘鳴편, 明石書店 1999년에서 인용

창씨개명령⁴⁾

1941년 12월 8일 진주만 기습, 9일 대미국 선전포고

1944년 본토폭격 본격화

1945년 동경대공습, 오키나와(沖縄)본토 점령, 히로시마(広島), 나가사키(長崎)에 원폭 투하.

포츠담 선언 수락, 항복문서에 조인

3) 국민징용령

국가총동원법에 의거한 칙령으로, 국민을 강제적으로 징발, 군수산업에 취로시켰다.

4) 창씨개명령

일본의 황민화정책의 하나로, 조선민족 고유의 성명을 빼앗아 일본식 성명을 강제로 사용하게 한 정책. 거부자는 아이의 입학을 거부, 관공서 기관으로의 무채용, 행정기관에서의 사무취급 거부 등, 압박을 당했다. 창씨개명을 거부하여 자살한 사람이나, 재판에서 싸운 사람들도 있었다.

제일코리안

~자료2 : 제일코리안 관련연표~

- 1945년 8월 18일 「재일조선인 대책위원회」 조직.
22일 「재일조선동포 귀국지도위원회」 결성.
9월 10일 「재일조선인연맹」
(「朝連」…「総連」의 전신)
민족교육을 추진·지도부를 공산당원이 차지한다
11월 「建靑」 발족
- 1946년 1월 「신조선건설동맹」
10월 「신조선건설동맹」을 중심으로 친일파·반공주
의자들이 결집해서 「재일조선거류민단」이 발족.
(「대한민국 거류민단」의 전신)
- 1948년 1월 일본의 학교교육법에 따라 조선어교육을 정과에서 제외하고, 과외
교육으로서 취급한다. 또한, 교육기본법의 규정을 적용해서 문부성
이 발행한 교육면허를 가지지 않고 민족학교 교원이 될 수 없게
했다. →민족학교의 사실상의 폐쇄를 의미했다.
<각지에서 민족학교 폐쇄에 대한 반대운동이 일어난다.>
- 8월 대한민국정부 수립
→민단을 「재일동포의 공인단체」로 한다.
-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조련」은 유일하게 정당한 정부라는 견해를 제시해 정권의
지지, 지원을 선언했다.
공산주의 세력에 대해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GHQ와, 재일조선
인을 동화시키려는 일본정부와의 충돌에 발전했다. 일본정부는
조련에 대해 북조선의 국기제양 금지를 통고했다.
- 1949년 2월 한국정부의 영사사무·「재외국민등록」사무·여권수속사무를 민
단에 위촉
- 9월 8일 <「민단」과 「조련」의 대립 격화>
냉전의 영향이 강해, 반공정책을 취한 GHQ의 지령으로 일본정부
는 「조련」을 해산시키고 자산을 몰수했다.
- 10월 13일 「조선인에 대한 조치」통고
학교의 개편, 폐쇄방침 명확화
19일 「학교폐쇄령」발령
민족학교 92개가 폐쇄되고, 토지·건물자산이 몰수되었다.

- 245개의 학교가 개편되었다.
- 12월 외국인등록령 일부개정
 - 재류유효기간 3년으로 단축
 - 벌칙규정의 강화
- 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
 - 6월 28일 「조국방위위원회」 발족. 행동조직으로서 「조국방위대」가 조직되었다.
- 1951년 1월 「재일조선통일민주전전」(「民戰」)의 결성
 - 8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조인(익년 4월 발효)

동서냉전 속에서

민단계 재일조선단체는 한반도가 「소련의 식민지」가 되는 것, 그리고 민전계 재일조선단체는 「미국의 식민지」가 되는 것에 위기감을 가졌다.

- 1952년 4월 강화조약 발효 <재일조선인은 일본국적 상실>
 - 재일조선인은 외국인으로
 - 발효 다음날, 「외국인등록법」이 공포, 시행되었다. 지문날인의무를 포함한 재일조선인의 단속이 강화되었다.
- 1953년 2월 「조선인 자녀의 취학에 대하여」 문부성이 통달
 - 일본의 공립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다.
 - 「각종학교」로서 민족교육을 유지
- 7월 휴전
- 1954년 5월 大達茂雄 문부대신이 민족교육의 폐쇄와 졸업자의 대학입학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방침을 내세웠다.
 - 조선대학교의 설립
- 1955년 5월 「재일조선인총련연합회」(「総連」) 발족
 - (민족파와 일본공산당일체파가 민전내에서 대립)

총련의 입장

총련은 북조선의 정책을 옹호하고, 그 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조직의 목적으로 했다. 기본적인 방침으로서 일본의 내정문제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북조선으로의 귀환요청운동을 전개했다.

참정권 획득운동의 부인

지방공무원의 국적조항철폐운동에 대한 불참

1959년 2월 각로회의 양해사항으로서
「인도주의의 입장에서 귀환을 허가」 받았다.
귀환허가실현의 배경에는, 귀환하는 재일조선인의 배상청구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귀환 경비를 부담할 것을 북한이 제시했었다.
당시 일본은 배상문제로 한국과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일조선인의 실업문제와 차별문제의 경감을 모색하고 있었다.

총련은 북한과의 연결을 더욱 강화시켜, 북한의 말단조직이 되어갔다.

한반도에서의 남북대립은 일본국내의 「총련」 「민단」의 대립을 심각화시켰다.

1960년 4월 이승만정권 붕괴

1961년 5월 박정희정권 수립
반공군사체제의 강화
국내경제의 재건

7월 북한, 소련·중국과 군사동맹
→한국·일본·미국을 자극

1965년 6월 「한일협정 및 제협정」 조인

1970년 12월 朴鐘碩씨·히타치(日立) 취직차별재판⁵⁾

5) 히타치 취직재판

…동명으로 입사시험에 합격한 박종석씨가 재일조선인임이 판명된 후 해고를 당했다. 취직차별, 인권문제로서 항의운동을 전개하여, 그 결과 히타치 제작소로 하여금 해고를 취소하게 만든 재판.

- 1976년 金敬得씨 · 사법시험의 국적조항 철폐운동⁶⁾
- 1979년 오사카(大阪) 야오(八尾)시, 일반사무직 · 기술직의 국적조항 철폐
- 1980년대부터 현재화한 문제(재일코리안의 정주화와 더불어 진행됨)
- | |
|------------|
| 지방공무원 채용문제 |
| 지문날인 거부문제 |
| 노령자 연금문제 |
| 지방참정권문제 |
- 1981년 일본의 국체(전국체전)에 재일외국인의 참가용인
- 1982년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
- 1984년 NHK 「한글 강좌」 개시
- 1991년 91년문제 한일외상 각서합의(지문날인제도 철폐)
가이후(海部)총리 「공촌 · 공생자」로서의 재일한국인상을 일본국민에게 명시
- 1993년 외국인등록법 일부개정시행
→영주자의 지문날인을 폐지하고, 사진 · 서명 · 가족등록을 채용.
오사카부 기시와다(岸和田)시 의회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주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를 인정하는 결의를 채택.
- 1995년 최고재판소 판결로 정주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첫 헌법판단이 내려짐.
- 1996년 「인권차별철폐조약」 발효
· 오사카부의 43개 자치체에서 무연금 외국인 고령자에 대해 특별금부금의 지급 결정(96년 4월 실시)
· 시가(滋賀)현 무연금 외국인 고령자에 대해 특별금부금의 지급 결정.
· 가와사카(川崎)시가 일반사무직의 수업자격의 국적조항철폐를 표명.

6) 국적조항 철폐운동

…사법시험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국적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법연수소 입소가 허가되지 않았다. 국적조항에 의한 차별로서 항의운동을 전개하여 입소를 인정하게 만든 운동.

• 도쿄도가 지방선거권 용인 표명, 정부에 범개정 요구 결정.

1997년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하마(横浜)시 등이 일반직의 국적조항철폐를 표명

[표1] '제일조선인의 인구'

연도	인수	연도	인수	연도	인수
1882	4	1903	224	1924	118152
1883	16	1904	233	1925	129870
1884	1	1905	303	1926	143798
1885	1	1906	254	1927	165286
1886	0	1907	459	1928	238102
1887	6	1908	459	1929	275206
1888	7	1909	790	1930	298091
1889	8	1910		1931	311247
1890	9	1911	2527	1932	390543
1891	6	1912	3171	1933	456217
1892	5	1913	3635	1934	537659
1893	7	1914	3542	1935	625678
1894	7	1915	3917	1936	690501
1895	12	1916	5624	1937	735689
1896	19	1917	14502	1938	799878
1897	155	1918	22411	1939	961591
1898	71	1919	26605	1940	190444
1899	188	1920	30189	1941	469230
1900	196	1921	38651	1942	1625054
1901	355	1922	59722	1943	1882456
1902	236	1923	80415	1944	1936843

위의 연표는 『在日朝鮮人』朴鐘鳴編、明石書店에서 일부인용.

[표4] 「제일코리안의 귀화자수」

연도	귀화자수	연도	귀화자수	연도	귀화자수
1952	232	67	3391	82	6521
53	1326	68	3194	83	5532
54	2435	69	1889	84	4608
55	2434	70	4646	85	5040
56	2290	71	2874	86	5110
57	2312	72	4983	87	4882
58	2246	73	5769	88	4595
59	2737	74	3973	89	4759
60	3763	75	6323	90	5216
61	2710	76	3951	91	5663
62	3222	77	4261	92	7244
63	3558	78	5362	93	7697
64	4632	79	4701	94	8244
65	3438	80	5987	95	10327
66	3816	81	6829	누계	194724

(범무성 발표)

[表5] 「연도별 북한 귀국자수」

年度	帰国者	年度	帰国者
1959	2942	1967	1831
1960	49036	1971	1318
1961	22801	1972	1002
1962	3495	1973	704
1963	2567	1974	470
1964	1822	1975	379
1965	2255	1976	256
1966	1860	1977	180

『在日コリアン百年史』金贊汀著、三五館、1997년에서 인용.

제일코리안

~재일코리안의 생활~

★ 전쟁중

『재일코리안 백년사』 「『민중시보』에서 보는 1935년 당시의 재일의 생활」(주)를 참고로, 전쟁전의 조선인의 생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이 인용한 『민중시보』(주)의 기술을 여기에 인용합니다. 1930년대의 재일조선인의 생활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민중시보』 창간호 사설 「우리의 제창」에서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사회의 시민, 정(町)민, 촌민에게 발생하는 문제는 여러 모로 많지만,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것일까? 여러 문제들에 대응해서, 그 문제들의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 각 방면을 방문하거나, 또는 투고 등에 의해, 그 때마다 의견을 발표하려고 하는 것이 본지 발행의 본의이다.

기자가 보는 바에 의하면,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 중, 도항의 엄한 제한, 인신·가택에 대한 특수한 단속, 주택의 대차, 고용 및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민족적 차별대우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제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일상생활상, 당연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 자신의 생활의 개선 및 향상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히 대중화한 병폐적 풍습으로서 투기의 횡행, 그룹 대항항쟁, 브로커의 횡행, 통일된 여론의 결여, 밀조주 제조의 횡행, 인신매매 및 원치, 씨족계의 잔재로 인한 악습관, 청년 대중의 불량화, 생활비의 저액 경향, 무진의 횡행, 주술, 점, 문맹, 지방주의 등, 일일이 셀 수가 없다.

기타 실용상 불편하고 개념 착오를 일으킬 유행어의 범람, 그리고 생활의 이중고가 가져오는 것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다.(후략)

위의 자료로는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재일조선인에 대한 민족적인 차별의식의 루트와 경제상의 문제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책에서 1934년에 각의결정된 「조선인이주대책의 건」의 구체적방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934년 「조선인 이주대책의 건」에 관한 각료회의 결정

1. 조선인 보호단체의 통일강화를 꾀함과 동시에, 그 지도, 장려, 감독의 방법을 강구할 것.
2. 조선인 밀집지대의 보수, 위생, 기타 생활상태의 개선향상을 꾀할 것.
3. 조선인을 지도 교화해서 내지에 동화시킬 것.

이와 같이 「내선일체화」 「황국황민화」 정책이 강력히 추진되었습니다.

현재의 외국인 등록증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협화회 수첩의 소지를 의무화시켜서 재일조선인을 감시·통제하고, 군사교련의 의무화, 「성지참배」의 강화, 조선식 결혼식 금지와 신전결혼의 강요 등, 동화책이 추진되었습니다.

1939년 11월에는 「조선인의 성명에 관한 건」(창씨개명령)을 공포해, 조선인명을 일본명으로 개명시켰습니다. 조선인은 일본명을 쓰지 않으면 학교에도 입학할 수 없고, 주식의 배급권이나 각종 관청 발행의 증명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쟁전의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는 정책이 실시되었습니다.

당시의 재일조선인이 놓인 환경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半分のふるさと(반쪽 고향)』(이상금 저, 福音館書店)을 들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전쟁전 일본에서 태어나서 청년기를 보냈을 때의 상황이 묘사되어 있으며, 생동감있는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재일코리안

~재일코리안의 생활~

★ 전쟁후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국의 포츠담 선언을 수락해 무조건항복했습니다.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끝났습니다.

조선으로 귀국하려는 재일코리안이 급증했습니다만, 조선으로의 연락선이 모자랐고, 일본정부도 이미 그들을 억지할 힘을 잃은 상태에서 효과적인 조치도 없는 채,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재일조선인은 방치되었습니다.

일본점령직후의 GHQ(연합국군 총사령부)의 재일조선인정책에는 확고한 방침이 없었습니다. 재일코리안의 대우에 대해서도 군사상의 안전을 허락하는 한해서 「해방 국민」으로서 귀국을 보장한 한편, 탄광노동자인 조선인과 중국인의 귀국은 금지되고 「적국 사랑 취급」을 했습니다. 홋카이도(北海道)의 유우마리(夕張) 탄광이나 죠오반(常磐)탄광에서는 이 조치에 대한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패전직후에 한반도에 귀국한 사랑의 수는 [표4] 「일본패전직후에 조선반도에 돌아간 사랑의 수」와 같습니다.

[표4] 「일본패전직후에 조선반도에 돌아간 사랑의 수」

1945년 8월~1946년 3월	약 1300000
1946년 4월~1946년 12월	82900
1947년	8743
1948년	2822
1949년	3482
1950년	2294

(후생성 인양원호국 통계)

『在日コリアン 百年史』金贊汀, 三五館 1997년에서 인용

그러나 재일코리안들은 「해방」과 「독립」의 열기 속에서 귀국하긴 했으나, 조선에는 이미 생활 수단이 없는 것을 알고, 귀국한 사랑의 일부가 일본에 재입국해 오는 혼란도 일어났습니다. 재일코리안 사이에는 본국에 돌아가도 생활이 어렵다는 정보가 이미 전해지고 있었으며, 일본에 생활기반이 있는 사랑들에게는 바로 귀국하려는 열의가 희박해졌습니다.

GHQ는 냉전이 시작한 상태였던 것도 있어 1946년 3월 이후, 「38도선 이북을 본 적지로 하는 조선인이 귀국하는 것을 정지시키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일본정부도 「4월 1일 이후의 조선인 귀환자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하는 조치」를 통달했다. GHQ는 공산주의국가에 대한 반공정책으로서, 그리고 일본정부

는 재산의 감소, 운수비 부담의 증대를 기피하기 위한 조치이었습니다.

본국에 돌아가도 생활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재일조선인은 재산을 가지고 나가는 것에 대한 제한 조치로 인해 귀국후의 생활을 더욱 우려해서 귀국을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재일코리안의 귀환이 정체되고, 그 후, 조선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많은 재일코리안이 일본에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일본에 잔류한 조선인과 그 후손이 오늘날의 재일코리안입니다.

제일코리안

~재일코리안의 생활~

★현재(코리안 타운을 걸어보며)

오사카(大阪) 순환선 츠루하시(鶴橋)역에서 내려 상가를 걸어보면, 거기에는 불고기집, 생선 가게, 채소 가게, 옷가게, 빗칭코 등이 즐지어 있습니다. 저녁 때면 저녁식사의 식재를 찾는 사람들이나 불고기집에 모이는 사람들로 활기칩니다. 화려한 한국·조선의 민족의 상을 점두에 진열하는 가게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KOREA TOWN」이라고 쓰여진 아주 새로운 아케이드에는 「2002 한일공동개최 월드컵을 성공시키자!!」라는 현수막도 걸려 있었습니다.

옷가게



거기에는 1600년전에 백제 사람들이 한성반도로부터 이주하여 대륙의 선진문화를 전한 곳이라고 합니다. 또한 츠루하시 주변에는 현재도 고대의 역사에 유래하는 지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의 히라노가와(平野川)라는 강도 백제천이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아케이드



근대에 들어와서 일본에 의한 한반도 식민지 지배가 강화되는 가운데, 생활의 양식을 찾아서, 또한 공업화를 받치는 노동력으로서 조선인 노동자가 일본의 각 도시나 생산현장에 도향했습니다. 특히 츠루하시(東成区) 주변은 화학·금속·기계기구 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 영세기업이 많아, 고무공업은 1920, 1930년대에 발전했습니다. 그 원동력이 된 것이 조선인 노동자였습니다. 제주도 와 오사카 사이에 제판항로가 있었던 이유로 오사카에는 제주도 출신자가 많이 도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인이 집중해서 사는 지역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카노(猪飼野) 지역은 큰 비가 내리면 침수하는 생활환경이 나쁜 지역이며, 당시 일본인은 살지 않고, 주거차별을 당한 조선인이 혈연, 지연을 의지하여 짐주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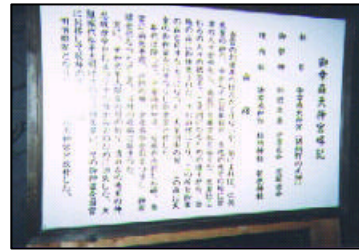
역사적으로 한반도와 관련이 깊은 이 지역은 현재 코리안 타운으로서 한민족의 문화를 살린 거리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2월도 닥쳐온 해질녘, 많은 배추로 호쾌하게 김치를 담그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서는 김치를 찾는 사람들이 줄을 짓고 있었습니다. 코리안 문화가 확실히 뿌리를 내린 모습을 코리안 타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유키모리 신사



설명판



참고문헌

『越境する民』杉原達著、新幹社 1998年

『在日コリアン百年史』金贊汀著、三五館 1997年

재일코리안

~재일코리안이 안고 있는 문제~

★행정상의 문제에 대하여

① 복지후생면의 불평등에 대하여

「공영주택의 입주자격」이나 「아동수당의 지급」에 붙어 있는 국적 조항 때문에 행정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사카에서는 1974년 10월, 15의 시민단체가 한일·조일 공동투쟁으로 오사카부 지사와 오사카시장에 대하여 재일코리안의

1. 공영주택 입주자격차별의 철폐
2. 아동수당의 지급
3. 노령연금이나 복지연금의 적용

을 요구했습니다. 이 신청에 대하여, 오사카부는 75년 2월, 재일코리안의 공영주택에의 입주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일본인이 받을 수 있는 행정상 서비스가 한국·조선 국적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행정상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② 재일코리안의 국민연금에 대하여

1959년 4월, 국민연금법에 제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자연금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의 가입요건은 연령요건·거주요건·국적요건으로, 재일코리안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으나 일본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981년, 일본은 난민조약을 비준했기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일본국민과 같은 사회보장을 부여하는 것이 제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요건의 국적요건도 철폐되어, 1982년 1월 1일부터는 재일코리안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86년 4월 신국민연금제도가 시작되어, 노령연금은 노령기초연금으로, 모자연금, 모자복지연금 등은 유족기초연금으로, 장애연금, 장애복지연금은 장애기초연금으로 명칭이 통일되었습니다.

(상기에 대해서는 별표 참조)

장애복지연금의 수급권이 없는 재일코리안 장애자는, 국민연금제도의 발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운동을 시작하여, 1986년 이후 후생성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후생성은,

·1982년까지는 재일코리안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장애복지연금(장애기초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1982년에 경과조치를 취하여, 무연금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지 않았으나(제도 발족

시에 는 했음), 이것은 제도를 확대한 데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며, 제도 확대시에는 경과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라는 두 가지 이유로 재일코리안 장애인 등에게 장애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재일코리안 장애자는 후생성에 대하여, 끈질기게 교섭을 거듭하여, 국민연금제도의 발본적인 개혁의 실현을 요구하여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후생성에 압력을 가하는 한편, 지방자치체에 대하여 국민연금제도의 발본적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인 조치로서 자치체의 독자적인 구제제도를 설정하도록 요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독자적으로 재일외국인에 대하여 구제제도 (월액 1~5만엔 정도의 금액을 지불)을 만든 자체제도 나타나, 1994년 4월에는 전국에서 100 자치체를 넘었습니다. 또한 재일외국인의 무연금 고령자에 대해서도, 독자적으로 구제제도를 만드는 자치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체에 따라 제도에 차이가 있는 것이 현상입니다.

현재의 움직임으로서는, 1994년의 임시국회에서 연금개혁법안이 가결 성립했을 때 있던 부대결의에 「무연금인 장애자의 소득보상에 대해서는 복지적 조치에 의한 대응을 포함하여 검토할 것」으로 되어 있으며, 서서히 해결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일외국인의 무연금고령자문제에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제일코리안

~재일코리안이 안고 있는 문제~

★교육상의 문제에 대하여

① 진학상의 문제(국립대학 입학상의 문제)

조선인학교 졸업생의 국립대학 입학자격에 대한 장애가 존재합니다.

공·사립대학 중에는 민족학교생의 수험을 인정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민족학교생이 국립대학에 입학할 경우, 재학중에 대학입학자격검정에 합격한 다음에 대학입시센터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 대학입학자격검정시험을 수험할 때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일본의 정시제·통신제 고등학교에 학적을 두어야 하며, 학비와 통학비 등의 부담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즉, 대학수험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② 민족학교에 대한 교육조성과 교육부조의 문제

지급되는 교육부조는 일본 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을 경우에는 적용됩니다만, 민족학교에 보내고 있을 경우는 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그 근거는 조선인학교를 각종학교취급을 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교육부조의 차별은 민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로부터 교육부조를 받는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교토(1991년도부터)등 일부 자치체에서는, 교육부조의 적용을 인정하는 데도 나왔습니다만, 조선인학교에 대한 조성금이 낮기 때문에 아이를 민족학교에 보내고 있는 부모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일코리안

~재일코리안이 안고 있는 문제~

★주택 문제에 대하여

주택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이 주거에 있어서 차별이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택금융공고의 용자는 물론, 공영주택이나 공단주택 등의 공공주택의 입주도 외국인은 실질상 배제되었습니다. 1979년에 일본이 국제인권규약을 비준함에 따라 건설성은 1980년에 「공적주택에 있어서의 외국인 취급에 대하여」 등에 의해 영주자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본인에 준해서 취급하도록 통달을 냈습니다. 그때 공영주택에 대해서는 외국인등록증을 필요로 하되, 원칙적으로 「국적」에 의한 제한을 철폐하는 통달도 냈습니다. 공단주택에 대해서는 영주자는 원칙적으로 일본국민에 준하며, 임대인 경우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면 된다는 대장성·건설성의 통달도 냈습니다. 그러나 원래 입주자격에 국적을 요건으로 하는 이유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84년 오사카부 이쿠노(生野)구내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입차등으로 주민표와 호적초본의 제출이 요구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약 25%, 외국인이란 이유로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약 34%로 되어 있습니다.

1992년 오사카부·사단법인 오사카부 택지건설거래업협회·사단법인 전일본 부동산협회 오사카부 본부가 실시한 「택지건설거래업자에 관한 인권문제 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집주인으로부터 재일외국인을 거절하도록 지시받은 경험이 「있다」 36.1%, 「없다」 60.7%로 매개업무를 하고 있는 업자로 열 군데 중 3~4 군데는 경험이 있는 것으로도 여전히 입주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코리안

~재일코리안이 안고 있는 문제~

★취직 문제에 대하여

① 민간기업 취직

재일조선인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는 극도로 좁아,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에 취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하의 자료는 『在日朝鮮人』朴鐘鳴, 明石書店에서 인용)

자본금 30억엔 이상의 민간기업(389사 중 회담 106사)를 대상으로 도쿄도립대학교 교육연구실이 1971년 7월에 실시한 「취직에 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채용에 있어서 재일조선인이라는 것을 문제로 삼는다」가 41.5%로 「본인 나름」이 37.7%이었습니다.

재일코리안에 대한 취직차별로서 상청적인 사건에 「히타치(日立) 재판」이 있습니다.

1970년 「일본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히타치 제작소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 것에 대하여, 채용이 취소된 박종석씨가 해고한 것이 부당한 민족차별이라고 하여, 히타치 제작소를 고소한 재판이 「히타치 재판」입니다. 4년간, 22회에 걸친 공판을 겪어, 74년 6월 19일, 요코하마(横浜) 지방재판소는 「재일한국·조선인의 일본명 사용은 해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히타치의 주장을 물리치고,

1. 해고의 무효
2. 판결까지의 미불 임금의 지불
3. 위자료의 지불

등의 원고측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취직차별의 실태가 밝혀진 재판이었습니다.

② 공무에의 취직

1. 국공립대학의 교원채용

외국인 공무원의 임용운동은 국공립대학에 있어서의 외국인교수 임용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75년 10월, 재일한국·조선인 대학교원 간담회는 문부상에 대하여 요청서를 제출하여, 「국공립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아시아인을 채용하기 위한 특별조치 실시」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동년 12월에는 국립대학협회 및 공립대학협회에 대하여 「재일한국·조선인의 국공립대학교원에 대한 차별철폐 등에 관한 요청서」를 제출. 그리고 77년 3월, 일본학술회의에 대하여, 「정주외국인 과학자의 처우의 개선에 관한 요망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공립대학협회는 79년 5월 「국공립대학에 있어서 외국인을 강사이상의

전임교원으로서 채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배제해야 할 제도상의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82년 8월에는 「국립 또는 공립 대학에 있어서의 외국인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성립, 동년 9월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에서는 외국인을 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는 것, 외국인 교수는 교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교수에 「임기」 등의 제한을 시사하거나, 관리직 취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검토과제로 하는 등, 대학의 국제화에는 큰 문제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2. 공립학교 채용

1980년대에 들어설 때까지 오사카와 도쿄를 제한 대부분의 지방자치체에서는 국적조항의 벽에 의하여 공립학교의 교단에 설 수 없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 대학의 국제화를 요구하는 재일코리안그룹의 외국인 차별철폐운동의 자극을 받아, 일본 각지에서 공립학교의 교원채용시험의 국적조항을 철폐하려고 하는 시민운동이 활성화하게 되었습니다.

1979년에 미에(三重)현에서 재일한국인이 공립학교교원에 채용된 것을 시작으로, 아이치(愛知), 시가(滋賀), 효오고(兵庫) 등의 관서지역에서 공립학교 교원채용에 있어서의 국적조항철폐운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이러한 민족차별철폐운동의 결과, 81년 효오고현과 시가현이 교원선고요항에 있어서의 국적조항을 철폐했고, 82년에는 아이치현에서도 동 국적조항이 철폐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82년 9월, 문부성은 국공립대학에 있어서의 외국인교원의 「임용특별조치법」이 공포될 때, 「국립, 공립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에 관해서는, 종래처럼 외국인을 임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 문부성 권고를 계기로 교원채용시험에 국적조항을 명문화하는 자치체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정세에서 드디어 1984년 12월, 교원채용시험에 합격한 재일코리안 양홍자(梁弘子)씨의 채용이 취소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립학교교원의 국적조항을 철폐하려는 시민운동이 일어나, 전국의 시민단체로부터 나가노(長野)현 교육위원회에 항의가 쇄도했습니다.

85년 2월, 여론의 동향을 무시할 수 없게 된 나가노현 교육위원회는, 양홍자씨를 교원이 아니라 상근강사로서 채용하는 타협책을 발표하여 이 사건의 수습을 꾀했습니다. 양홍자씨는 상근강사로서 채용되어, 이 조치는 그후 외국인 교원의 채용을 둘러싼 문부행정의 전례가 되었습니다.

3. 공무원의 채용

1975년에 오사카부의 재일코리안 고등학생 2명이 준 국가공무원직이라고 하는 전전공사(電電公社)를 수험했습니다. 그러나 전전공사는 그들의 수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4 개의 시민단체가 재일코리안학생의 수험거부에 항의하는 공동투쟁회

의를 결성하여, 전전공사의 국적조항철폐운동을 벌였습니다.

다음해도 다른 재일코리안이 전전공사를 수험했는데 수험을 거부당했습니다. 그의 모교인 니시노미야니시(西宮西) 고등학교의 교원 유지가 전전총(全電通)노조에 공동투쟁을 호소하므로써 전전공사의 국적조항철폐운동은 커졌습니다. 국회에서도 77년 3월, 중의원(衆議院) 예산위원회에서 의제로 채택되어 논의되었습니다.

77년 9월, 전전공사는 「앞으로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용모제한은 하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발표하여 국적조항을 철폐했습니다. 드디어 수험을 인정받은 재일코리안 청년도 시험에 합격하여, 78년 4월부터 전전공사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78년, 오사카의 야오(八尾)시에서는 공무원의 일반행정직 수험자격에 있어서의 국적조항철폐를 요구하는 운동이 노동조합과 민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2년에 걸친 시와의 교섭을 거쳐 79년 8월, 야오시는 시 직원의 국적조항을 철폐했습니다. 이 운동의 승리는 곧 전국으로 퍼질 지방공무원의 국적조항철폐운동의 선구가 되었습니다.

야오시에 있어서의 공무원 국적조항철폐운동은, 곧 「공적 의사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국가공무원 특정직의 문호개방운동으로도 퍼졌습니다. 국회 공무원직에도 외국인이 일할 수 있는 직종이 있지 않은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 것은 1983년 9월, 야오시의 재일코리안 고등학생 2명이 오사카시 중앙우체국의 창구에서 우편외무원 채용시험의 수험을 신청한 후입니다. 그들은 「일본국적을 보유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수험을 거부당하게 되는데, 그들의 문제제기는 많은 일본인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84년 5월,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운동의 결과, 우정성 외무원의 국적조항 철폐로 이어졌습니다.

제일코리아

~재일코리아가 안고 있는 문제~

★상업상의 문제에 대하여

① 특정업종에서의 배제

예) 광업권, 무선국의 개설 금지, 수로안내인, 경마 기수

② 무역면의 규제와 차별

예) 북한산품의 수입규제와 차별(수산물의 수입배제) · 관세적용상의 차별

③ 유기장이나 음식업에 대한 규제의 강화 · 경찰권력의 개입

④ 시중은행의 사업자금이나 운전자금의 음자기피

⑤ 토지건물의 임대거부

⑥ 공공사업 입찰에 있어서의 조선인업자 축출

제일코리안

~재일코리안이 안고 있는 문제~

★지문날인문제에 대하여

지문날인문제는 1980년 9월 10일, 재일한국인 1세인 한종석(韓宗碩)씨가 도쿄 신쥬쿠(新宿)구청에서 외국인등록증의 변경할 때 의무화된 지문날인을 거부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지문날인에 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이상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20만 엔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이 과해져, 귀국이나 해외도항에 있어서 일본으로의 재입국허가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리스크를 입어서 한 거부이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80년대 전반에는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재일외국인이 증가했습니다.

지문날인은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이라는 여론이 높아져, 지문날인제도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외국인 뿐만 아니라 일본인 측에서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일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는 1989년 3월의 외국인등록법 개정으로 전면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재일코리안

~재일코리안이 안고 있는 문제~

★참정권문제에 대하여

1933년의 오사카부 기시와다(岸和田) 시의회에서 가결된 「정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등의 인권보장의 확립에 관한 요망결의」를 계기로, 일본정부에 정주외국인의 참정권을 인정시키려는 지방의회의 결의와 의견서의 채택이 일본전국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1995년 2월의 「정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서는 금지되어 있지 않다」라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이러한 지방의회의 활동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최고재판소 판결이후, 「정주외국인의 참정권」결의와 의견서를 채택한 의회는 전국자치체의 약 4할에 해당되는 1383의 부현시정촌(府縣市町村)에 이릅니다.

참정권을 요구하는 여러 재판을 거쳐, 또한 95년의 최고재판소 판결을 거쳐 각 정당도 정주외국인에 대한 참정권문제를 의논해 왔습니다. 자민당은 「상호주의」(상대국이 그 나라에 재주하는 일본인에게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 일본도 재일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의 원칙을 내세워, 재일외국인의 참정권부여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95년이후 정치개혁협의의 주제에서 이 문제는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나 1998년 10월에 방일한 김대중 대통령의 「재일한국인 2세·3세는 일본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큰 공헌을 하고 있다. 그들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해주기 바란다」라는 요망을 받아, 재차 정치의 장에서 재일외국인의 참정권부여를 둘러싼 문제가 의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일코리안사회에는 전전의 융화정책(동화정책)의 일환으로 부여된 참정권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여, 민족성 보지를 위해서는 참정권부여에 대하여 반대 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재일코리안도 있습니다.

재일코리안으로서 참정권을 부여받기 위하여 참정권획득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고문헌

『<在日>という生き方』 朴一著、講談社選書メチエ、1999年

『在日朝鮮人』朴鐘鳴編、明石書店、1999年